

서울고등법원

제 10 민사부

조정조서



사 건 2014나5540 손해배상(기)  
(원심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7175)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표시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구현주  
피고, 항소인 로얄뱅크 오브 캐나다  
캐나다국 온타리오 토론토 베이 200가 로얄뱅크플라자(Royal Bank Plaza, 200 Bay Street, Toronto, Ontario M5J 2W7, Canada)  
대표이사 고든 엠 닉슨(Gordon M. Nixon)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박성하, 김수희

수명법관판사 김 인 욱 기 일 : 2016. 11. 30. 14:40  
법원 사무관 이 소 영 장 소 : 서관 제1702호 판사실  
공개 여부 : 공 개

원고(피항소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출석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하 출석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내역표의 조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2016. 12. 30.까지 지급하되, 같은 날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조정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 청 구 의 표 시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4. 27.부터 2012. 11.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추가연계증권의 발행 및 헤지

1) 한화증권 주식회사(이하 '한화증권'이라 한다)는 2008. 4. 22. POSCO 보통주와 SK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화스마트 추가연계증권 제10호"라는 명칭의 추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이하 '이 사건 ELS'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개월 단위의 조기상환 기준일 및 만기상환 기준일에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조건성립가격(3개월 단위로 90%, 85%, 80%, 75% 순)을 충족하면 약정된 연 22%의 수익금이 지급되는 스텝다운(Step Down)형의 구조화된 상품이다.

#### 1. 상품개요

- 기초자산: POSCO 보통주, SK 보통주
- 만기일: 2009. 4. 27.



2. 기준가격 결정일 및 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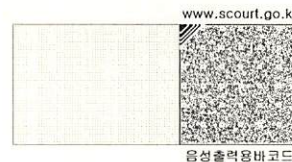
- 최초기준가격: 2008. 4. 25. 각 기초자산의 증가(POSCO 보통주 494,000원, SK 보통주 159,500원)
- 자동조기상환 평가가격: ① 2008. 7. 22, ② 2008. 10. 22. ③ 2009. 1. 20. 각 기초자산의 증가
- 만기평가가격: 2009. 4. 22. 각 기초자산의 증가

3. 수익구조

구분	내용	투자수익률
자동조기상환	① 첫 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두 종목의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② 두 번째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종목의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③ 세 번째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종목의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연 22.0%
만기상환	④ 두 종목의 만기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⑤ 【두 종목 중 어느 한 종목이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미만이고, 【두 종목(장중가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0% 이하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22.0%
	⑥ 【두 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75%】 미만이고, 【만기까지 한 종목이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60% 이하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장중가 포함)】 → 원금손실(만기평가일에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1} × 100%	[-100% ≤ 손실률 < -25%]







2) 한화증권은 이 사건 ELS의 조기상환조건 또는 만기상환조건이 충족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상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08. 4. 25. 캐나다 최대 상업은행인 피고와 사이에 6,876,6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ELS와 동일한 구조인 파생금융상품을 매입하는 내용의 스왑계약을 체결하여 백투백 헤지(back to back hedge)를 함으로써 이 사건 ELS의 발행으로 인한 위험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3) 원고들은 한화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ELS를 매입하였다.

나. 만기평가기준일 피고의 헤지거래 내용

1) 이 사건 ELS의 만기평가가격 기준일인 2009. 4. 22.(이하 '이 사건 기준일'이라 한다) 당시 POSCO 보통주의 주가는 402,500원대에서 형성되어 상환조건(기준가격의 75%인 370,500원)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나, SK 보통주의 주가는 상환조건(기준가격의 75%인 119,625원)에 근접한 122,200원대에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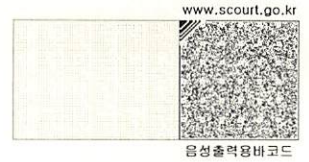
2) 피고 소속 트레이더인 제임스 블루(James Blue)는 이 사건 기준일 피고의 국내 증권 거래중개인이던 크레딧리요네증권(CLSA) 서울지점에 개설된 피고 계좌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SK 보통주 86,577주를 접속매매시간대에 16,577주를 매도하였고, 단일가매매시간대에 70,000주를 매도(이하 '이 사건 주식매도행위'라 한다)하였다.

3) 이날 접속매매시간대의 SK 보통주의 거래량은 총 189,825주로 피고의 매도관여율은 8.7%였고, 주가는 시초가(09:00:00) 122,500원으로 시작하여 단일가매매시간대 직전까지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시간	주가
10:05:40	124,000원
10:54:10	121,500원
13:25:50	120,500원
14:14:00	123,000원
14:49:54	120,500원

4) 이날 증가 단일매매시간대에 진입할 당시 SK 보통주의 주가는 120,500원이었고, 단일매매시간대의 거래량은 138,041주, 피고의 매도관여율은 50.7%였다. 구체적으로 단





일가매매시간에 진입한 이후의 제임스 블루의 매도주문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문시각	호가	수량	예상체결가격	
			호가 전	호가 후
14:51:29	118,000원	5,000주	120,000원	119,500원
14:51:43	118,000원	5,000주	123,000원	123,000원
14:51:57	118,000원	10,000주	123,000원	120,500원
14:52:10	118,000원	5,000주	125,000원	120,000원
14:54:19	118,000원	5,000주	122,000원	120,500원
14:56:01	115,500원	10,000주	118,000원	118,000원
14:57:14	115,500원	10,000주	119,000원	118,500원
14:57:53	114,500원	10,000주	119,000원	118,500원
14:59:04	114,500원	10,000주	118,500원	118,000원

5) 이날 SK 보통주의 종가는 이 사건 ELS의 상환조건인 119,625원에 미치지 못하는 119,000원으로 결정되었고, 결국 이 사건 ELS의 만기상환조건은 성취되지 않았다.

#### 다. 만기상환금의 지급

원고들은 만기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만기일인 2009. 4. 27. 한화증권으로부터 만기상환금으로 각 원금의 약 7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았다.

#### 라. 이 사건 주식매도행위에 대한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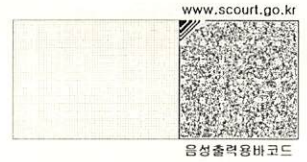
이 사건 주식매도행위에 관하여, 한국거래소는 2009. 5.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에 위반된 행위라고 판단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였고, 금융위원회는 2009. 12. 11.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 제4항 3호에 위반된 행위라고 판단하여 제임스 블루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트레이더인 제임스 블루는 이 사건 기준일에 SK 보통주의 시세를 하락시키고 이를 고정시킬 목적으로 SK 보통주를 대량으로 매도함으로써, SK 보통주의 주가를 만기상환 기준가격인 119,625원 미만인 119,000원으로 고정·유지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①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4항 제3호의 시세조정행위, ②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거래행위, ③ 신의칙에 반하여 원고들의 만기상환 조건성취를 방해함으로써 원고들의 만기상환금 지급청구권을 침해하는 제3자 채권침해행위, ④ 자본시장법 제37조 등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의무와 투자자이익우선의무 위반행위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만기상환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2009. 4. 27. 받을 수 있었던 투자원금과 투자원금에 대한 연 22%의 수익금에서 이 사건 주식매도행위로 만기상환조건이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지급 받은 투자원금의 약 74.6%에 해당하는 돈을 뺀 나머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제임스 블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 사무관 이 소 영



수명법관판사 김 인 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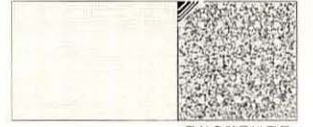


별지

## 원 고 표 시

7페이지 ~ 18페이지

(원고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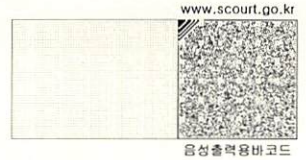
별지		계산내역표				
[표의 금액 단위는 모두 원임]						
번호	원고	투자금	만기상환수익	만기상환금	청구금액	조정금액
		①	②=①×122%	③	④=②-③	④*124%
1	양 ○○	10,000,000	12,200,000	7,461,000	4,739,000	5,876,360
2	최 ○○	17,000,000	20,740,000	12,683,700	8,056,300	9,989,812
3	정 ○○	20,000,000	24,400,000	14,922,000	9,478,000	11,752,720
4	박 ○○	10,000,000	12,200,000	7,461,000	4,739,000	5,876,360
5	김 ○○	10,000,000	12,200,000	7,461,000	4,739,000	5,876,360
6	최 ○○	20,000,000	24,400,000	14,922,000	9,478,000	11,752,720
7	박 ○○	13,000,000	15,860,000	9,699,300	6,160,700	7,639,268
8	박 ○○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법정대리인 부:박 ○○ 모:오 ○○	15,000,000	18,300,000	11,191,500	7,108,500	8,814,540
9	박 ○○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법정대리인 부:박 ○○ 모:오 ○○	15,000,000	18,300,000	11,191,500	7,108,500	8,814,540
10	박 ○○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법정대리인 부:박 ○○ 모:오 ○○	15,000,000	18,300,000	11,191,500	7,108,500	8,814,540
11	정 ○○	10,000,000	12,200,000	7,461,000	4,739,000	5,876,360
12	곽 ○○	50,000,000	61,000,000	37,305,000	23,695,000	29,381,800
13	권 ○○	28,400,000	34,648,000	21,189,240	13,458,760	16,688,862
14	임 ○○	46,000,000	56,120,000	34,320,600	21,799,400	27,031,256
15	오 ○○	46,000,000	56,120,000	34,320,600	21,799,400	27,031,256
16	김 ○○	10,000,000	12,200,000	7,461,000	4,739,000	5,876,360
17	송 ○○	38,000,000	46,360,000	28,351,800	18,008,200	22,330,168
18	조 ○○	5,000,000	6,100,000	3,730,500	2,369,500	2,938,180
19	정 ○○	10,000,000	12,200,000	7,461,000	4,739,000	5,876,360
20	견 ○○	20,000,000	24,400,000	14,922,000	9,478,000	11,752,720
21	박 ○○	30,000,000	36,600,000	22,383,000	14,217,000	17,629,080
22	황 ○○	5,000,000	6,100,000	3,730,500	2,369,500	2,938,180
23	황 ○○	2,000,000	2,440,000	1,492,200	947,800	1,175,272
24	황 ○○	1,000,000	1,220,000	746,100	473,900	587,636





20페이지 ~ 23페이지

(원고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 정본입니다.

2016. 12. 1.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이소영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